

##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7. -----</p> <p>----- <u>관련 서류나 분석결과</u>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8.~14. (생략)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</p> <p>----- <u>관련 서류(전자이미지 포함)</u> 및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8.~14. (현행과 같음)</p>	<p>*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에 따른 제출서류 개념에 '전자이미지' 포함</p>
<p><b>제7조(수출신고 및 제출서류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법 제226조와 「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 : 각 개별법령별</p>	<p><b>제7조(수출신고 및 제출서류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법 제226조와 「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: 각 개별</p>	<p>* 관련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요건확인 서류(단,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: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 <b>에</b> 필요한 서류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 「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」 제12-1조(신고인 관리) 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법령별 요건확인 서류(단,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: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<b>심사</b>에 필요한 서류(다만,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)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 「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」 제52조(신고인 관리) 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* 3호와 동일한 단서로 재수입조건부 재수출조건부 수출시 단순반복 포장용기는 서류제출에서 제외</p> <p>* 관련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⑧ <신 설>	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. 전자문서로 제출한 서류를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* 전자서류 제출의 예외 상황 명시
제8조(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)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<u>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</u> 으로 한다.	제8조(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)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<u>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</u> 으로 한다.	* 수출신고시스템 변경으로 수입신고(제출번호 부여 없이 곧바로 신고번호 부여)와 동일하게 규정
제12조(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) ① - -----, <u>수출입신고필증</u> 에	제12조(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) ① - -----, <u>수출신고필증</u> 에	

현행	개정안	비고
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수입신고필증 : 수출신고번호 xxx-xx-xxxx xxxxx호(xx.xx.xx 수리)로 전량(또는 일부 xx개)을 계약상으로 수출 2. 수출신고필증 : (생략)  ② (생략)	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<삭제> 2. (현행과 같음)  ② (현행과 같음)	* 전산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
제25조의2(임시개청) <신 설>	제25조의2(임시개청)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출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무원복무규정」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임시개청 신청(통보)서(별지 제16호 서식)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	* 임시개청 조항 신설로 사무분장 사항 명확화

현행	개정안	비고
	②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해당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.	
제26조(신고사항의 정정) ① (생략) 1.~4.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1.~4. (생략) 5. ----- ----- ----- -----,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 되었다면 거쳤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	제26조(신고사항의 정정) ①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-----,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한다. 가.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	*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 정정시 요건사항 명확화(지침 운영 사항 반영)

현행	개정안	비고
여 정정을 허용한다.  6.~7. (생략)	거친 것 나. 계약서, 법원 판결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  6.~7. (현행과 같음)	
제33조의2(보세판매장 수출신고) <신설>	제33조의2(보세판매장 수출신고)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(제조·가공·조립·수리·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의 “수출신고서 작성요령” (1)가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	* 보세판매장의 외국인 대상 국산품 판매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간이한 수출신고 절차 및 신고항목 규정

현행	개정안	비고
제37조의2(송품장 통관목록자료 전송) --- -----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.	제37조의2(송품장 통관목록자료 전송) --- ----- 별지 제17호 서식의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.	* 국종망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
제53조(자체조사 및 고발의뢰) ①~② (생략) ③ ----- 「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의2제1항 ----- ----- -----.	제53조(자체조사 및 고발의뢰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「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」 제14조제1항 ----- ----- -----.	* 근거조문 변동
제54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 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54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 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* 재검토 기한 조정

현행	개정안	비고
	부 칙<관세청고시 제2016-00호 (2016. . .)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. 제3조(적용례) 제33조의2 규정 및 별표 수출 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	* 제33조의2 보세판매장 수출신고 시스템 원비 후 제도시행 관련 적용 시점 별도지정